

## 인권센터 운영규정

2022. 05. 01. 최초제정

2022. 09. 01. 부분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유허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행위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행위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행위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1.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수, 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우리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명이라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센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행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담
2. 인권침해 행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인권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 등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5.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6.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련 부서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7. 인권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대학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센터장은 인권센터(이하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센터에 인권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상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④센터에는 인권침해 행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인권상담실을 두고, 인권상담실에는 고충상담원을 둔다.

⑤성희롱·성폭력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제6조(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인권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직원 5인,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여부회장, 대의원회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9.01.>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인권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위해 센터장 외 4인 이하의 조사위원

을 둘 수 있다.

⑦위원장은 인권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사항 중 피해자 및 가해자에 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에 학생위원의 참석을 제외한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⑧위원회는 필요시 교내·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전임교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과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기능)** 인권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행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행위 등 여부의 결정·조정·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기타 인권침해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6. 규정 및 세칙의 개·폐
7.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척 및 기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업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기타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어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본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행위 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조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한다.

③위원은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 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 시 구성하며,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해산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의 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행위 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2. 인권침해 행위 등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청취
3.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후 보고

**제12조(자문위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사건 조사 및 처리, 조정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장 인권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와 구제

**제13조(사건처리의 원칙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 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센터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모든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인권침해 행위 등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⑦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상담 및 신고와 접수)** ①인권침해 행위 또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2.09.01.>

④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한다.

⑥센터는 이미 조사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5조(신고의 각하)** ①인권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개정 2022.09.01.>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인권센터운영위원회 회부)** 신고접수를 받은 센터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하

여 사건을 인권센터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가 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가 이를 중재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행위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조사위원회의 업무개시 시점은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하고,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센터운영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신고인이 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⑤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센터장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해당기관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인권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처리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의 기각)** ①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①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결정의 통지)** 센터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권고한 처리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당사자의 권리)** ①당사자는 센터장과의 사전 협의 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5조(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및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 센터의 사건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 또는 관계자는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공개·누설 및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09.01.>

**제27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예방조치)**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상담창구 마련
2.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지원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5. 성희롱·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제4장 교육

**제29조(폭력 예방교육)** ①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법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교육)** ①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교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장 보 칙

**제31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운영세칙)** 센터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보건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 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